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0010016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0.04.0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14.]

월 수 금

정 보 공 개 서

가맹본부 [월수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6

전화: 031-410-0563 팩스: 031-414-229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관리팀 / 031-410-0563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 (앞으로 [월수금]라 합니다)의 내용 4.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 월수금 연혁 3.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월수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4. 최근 3년간 [월수금] 가맹점 수

5. [월수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6.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8. 광고·판촉 지출 내역
- 9. 가맹금 예치 기관
- 1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가	맹점사업자의 부담
1.	.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 영업 중의 부담
3.	.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영	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 물품 구입 및 임차
2	.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3.	. 신용 제공 등 내역
4	.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5.	. 영업지역 보호
6	.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 광고 및 판촉 활동
1	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	1.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	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Ⅱ 가	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등에 대한 지원
1.	.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
2	.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내역
_	. 경영활동자문
	. 성성필증시판

V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new_contents/info/info_021m.php?lawcode=09)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ㅇ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린	ᅼ드	주 소					
	월수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6					
위人그	법인 설립등	7 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			
월수금	개인사업자		2011.05.09	권준혁	031-410-0563		없음	
	법인등록번호 개		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호 134-2		29-6767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o 당사의 특수관계인과 관련정보는 해당이 없습니다.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월수금]이라 합니다)의 내용

ㅇ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월수금	
상 호	월수금 OO점	
	월수금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940970000
상표(서비스표)	항 월수급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2331500000 자세한 내용은 I-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표지	ままれる対域が表現を表現である。 を対する。 をがする。 をがしる。 をがす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 をがし。 をがし。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 をがしる。 をがし。 をがしる。 をがしる。 をがし。 をがし。 をがし。 をがし。 をがし。 をがし。 を	월수금은 돼지를 잡는 날로서 매일 신선한 돼지고기를 제공 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

4.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o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 (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569,577	1,742,781	826,797	687,894	73,464	63,068
2022년	3,466,477	2,549,833	916,644	832,144	130,548	81,082
2023년	3,612,048	2,478,287	1,133,761	<mark>781,517</mark>	158,208	<mark>60,316</mark>

(직영점 및 당사 대표자 명의의 다른 사업장의 재무자료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당사의 최근 3년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ㅇ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려서ㅂ	이름	를 현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C	이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관련임원	권준혁	대표	2008.03 ~ 현재	월수금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비관련임원	해당 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o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지워스/명)
시급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3년 12월 31일	1	-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ㅇ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월수금]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o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 권리내용 등록일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월수금 (상표권)	43 류	출원일 2013.09.23. 등록일 2014.07.16.	출원번호 4120130036570 등록번호 4102940970000	권준혁	2024.07.16.	
ॐ원수급 (상표권)	43 류	출원일 2012.01.09. 등록일 2012.06.04.	출원번호 4120120000780 등록번호 4102331500000	권준혁	2032.06.04.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Ⅲ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0년 09월 0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08년 3월 5일)

2. 월수금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통돼지랑	월수금	권준혁	2008.03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세시 6	<u></u>	프트크	2011.1.13	초지동 745-1번지 1층
통돼지랑	통돼지 잡는 마을	권준혁	2011.1.1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페시당	중페시 법단 비글	선판역	2011.3.24	초지동 745-1번지 1층
투데지라	통돼지 볶음찌개	긔ㅈᆏ	2011.3.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통돼지랑	전문점	권준혁	~2011.05.08	초지동 745-1번지 1층
기 시 의 시 그	의人그	긔ㅈᆏ	2011.05.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라스월수금	월수금	권준혁	~2014.2.28	원포공원 1로 26
의소그	의소그	기즈성	2014.03.01.~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월수금	월수금	권준혁	재	원포공원 1로 26

3. 월수금 업종

영업 표지	업	종
의人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푬)
걸ㅜ급	한식	돼지고기 찌개 요리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월수금]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4	23	1	22	21	1	21	20	1
서울	2	2	-	1	1	-	1	1	_
부산	ı	-	-	-	-	-	_	_	_
대구	-	-	-	-	-	-	_	_	_
인천	7	7	-	5	5	-	5	5	_
광주	-	-	-	-	-	-	_	_	_
대전	ı	_	-	-	-	-	ı	_	_

울산	-	-	-	-	-	-	_	_	_
세종	-	-	-	-	-	-	_	_	_
경기	12	11	1	13	12	1	12	11	1
강원	-	-	-	-	-	-	_	_	_
충북	1	1	-	1	1	-	1	1	_
충남	-	-	-	-	-	-	_	_	_
전북	-	-	-	-	-	-	_	_	_
전남	-	-	-	-	-	-	_	_	_
경북	-	-	-	-	-	-	_	_	_
경남	2	2	-	2	2	-	2	2	_
제주	ı	-	-	-	-	-	_	_	_

5. 최근 3년간 [월수금] 가맹점 수 월수금의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24	-	-	1	2	23
2022년	23	2	2	2	-	21
2023년	21	-	-	1	1	20

- 6. [월수금]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ㅇ 당사는 [월수금]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ㅇ [월수금] 가맹점사업자가 직전년도에 올린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2	2023년 가'	맹점사업자	의 연간 평	명균 매출인	1	
지역	말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3.3㎡당 매출액	상한 매출액	3.3㎡당 매출액(상)	하한 매출액	3.3㎡당 매출액(하)	비고
전체	20	292,221	8,321	618,278	15,457	104,136	3,471	20곳 산정
서울	1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부산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구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인천	5	325,135	9,862	618,278	15,457	204,539	5,869	5곳 산정
광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	_		-	_	5곳 미만
울산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세종	_	해당없음	_	_	_		_	5곳 미만
경기	11	282,626	7,631	559,129	12,183	104,136	3,471	11곳 산정

	2023년	2	2023년 가	맹점사업자	·의 연간 평	명균 매출인	H 1	
지역	말 가맹점 수	연평균 매출액	3.3㎡당 매출액	상한 매출액	3.3㎡당 매출액(상)	하한 매출액	3.3㎡당 매출액(하)	비고
강원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_	_	_	_	1	5곳 미만
충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북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경남	2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제주	_	해당없음	_	_	_	_	_	5곳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 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월수금]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3	20	2,36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ㅇ 당사는 [월수금]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직전년도 말 기준으로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o 당사에서 [2023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비고
광고비	인터넷 등	연중	13,157	-
판촉비	-	연중	<u>.</u>	-

*본 정보공개서 영업표지 및 당사가 사용한 금액은 상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가맹본부 가 회계상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발생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상품개발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02-729-6574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ㅇ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기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가맹점시업지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o 귀하가 [월수금]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ㅇ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5,500	계약 체결 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시 일부 또는 전부	영업개시 후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해지 시	교육시작 후	

2) 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시	가맹금 미지급, 손해배상 등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3,000]천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000
가맹비	5,500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6,000]	2,200			99.174m²(30평 형) 기준
주방설비 및 집기		13,200	440			
인테리어/시설		42,900	1,430		물품 입고 전	
도자기 불판	별첨1_1 거래상대방 참고	3,300		계약시	혹은 설치전	매장상황에 따라 변화 가능
숙성냉장고		1,100		또는 견적시	계약해지시/ 간판은 제작전	
간판	<u> </u>	3,300			계약해지시	
인쇄물		2,200				

- 위 표의 금액은 99.174m²(30평형)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가맹점 규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ㅇ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o 상기내역에서 전기승압장치, 냉난방기, 외부환풍, 어닝, 외부공사, 식기세척기, 포스설치, 각종인허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비용이 부담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ㅇ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 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o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ㅇ [월수금]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ㅇ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 분담비 판촉비	가맹본부 가맹본부		세한 내용은 V-9-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 시 반환 안됨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의 결정	간판 제작시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및 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 외한 나머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3년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o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당사는 가맹점 감독시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 사업자와의 계약 승계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

당되므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중 미 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 지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o 귀하가 운영하는 [월수금]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당사와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개점에 필요한 교육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o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월수금]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 니됩니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o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별첨1_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 주요품목별 공급가격은 (별첨1_2.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 지 않고 있습니다.

-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 2)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본 정보공개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도자기생삼겹살			
통돼지김치찌개			
꽁치김치찌개			
제육볶음(大)			
제육볶음(中)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2020.03월 기준
왕열무국수			
열무냉면			
두부사리			
라면사리			
떡사리			
공기밥			

- o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ㅇ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따른 판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o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도자기생삼겹살	9,000		
통돼지김치찌개	5,000		
꽁치김치찌개	5,000		
제육볶음(大)	25,000		
제육볶음(中)) 15,000	4 500	
왕열무국수	4,500		2020.03월 기준
열무냉면	4,500	서면을 통한 공문 발송	
두부사리	2,000		
라면사리	1,000		
떡사리	1,000		
공기밥	1,000		

o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혐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하는 찌개 외식사업	월수금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HL74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반경 500m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의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 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 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90일 사 이 통보) → 가맹점사업자 와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60일 이내 동의여부 회 신)→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배 돌의 [[[무이진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ㅇ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o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ㅇ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월수금]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귀하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 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6) 귀하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원·부재료는 제외)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TLIL O⊐LOI모	71EL 03L01
	(가맹점 총 매출액)	(직영점 총 매출액)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9.3%	10.7%	0.0%	0.0%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 전용판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0%	0.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 ㅇ [월수금]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또한, 갱신할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 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ㅇ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o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8조 2항
ㅇ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8조 2항
o 가맹사업의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판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8조 2항
ㅇ [월수금]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8조 2항
o 당사에서 귀하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관련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만,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8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ㅇ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물품대금, 광고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0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5조의 영업표지 등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30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3조의 비밀유지 의무 등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30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4조의 경업금지 의무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30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7조의 물품 등의 공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 간의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30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32조의 영업양도 등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을 위반한 경우	30조 1항
ㅇ 귀하가 가맹계약서 및 관련된 내용(예 : 특약, 별도 약정서, 합의서, 동의서 등 기타 제반 문서)을 위반한 경우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 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 효가 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 경우	시된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o 천재지변,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등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0조 3항 ≟ 경

- o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o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 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 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이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ㅇ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o 다만, 위 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중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o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쌍방의 서면 합의 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ㅇ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o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 지 →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o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교육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양도인의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o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망시에만 가맹점운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 가능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가맹점의 승계의 의사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같습니다	사망시에만 가능
대리행사	불가능			
업무위탁	불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o 귀하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월수금] 가맹사업과 동종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ㅇ 당사는 [월수금]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주 6일 / 월 25일 이상	당사와 사전협의 (031-410-0563)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o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ㅇ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ㅇ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o 당사는 [월수금]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 또는 일부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광고 및 판촉활동의 지역 내 가맹점 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절차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개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광고	전국	브랜드광고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및 지역 별 광고	브랜드 광고 + 가맹점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0.7.	모집광고	71.011	YFOI FH	<판촉>
		전국 및 지역별판촉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동의절차 시 행사별로 분담비율 안내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판촉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판촉	-	100%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o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o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36,1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29~28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7	13,000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대체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6~24(3일)	23,10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3~11(13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1(1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o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규모에 따라 소요비용의 금액과 지불하는 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귀하는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 o 당사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에 앞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o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창업문의: 031-410-0563

- 24 -

VII

가맹본부 경영 및 영업활동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 또는 이에 또는 이에 결함이나 유로 인하는 사유로 의자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 (장비.집기의 교 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 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추가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 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로부터 3년 이내 에 가맹본부의 책 임없는 사유로 계 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포 함)되는 경우 가 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 하는 부담액은 지 급하지 아니하거 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서 판매촉진행사시 지원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창업문의: 031-410-0563

- 25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객관리,위생관리,교육훈련,회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 의 성명, 소요비용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경영지도 후 7일이 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 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판매촉진,고 객관리,위생관리,교육훈련,회 계등 가맹점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영, 소료미용등 포함)글 /[영검사합사 에게 제시_\경역자도 ㅎ 7일이내에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자금지원은 본인 신용으로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하 경영상 지원내역

해당없음

정보공개서 창업문의: 031-410-0563 - 26 -



교육 · 혼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o 당사는 [월수금]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소개, 조리교육 등	실습/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오픈 교육	사업정책, 운영교육 등	실습/강의	오픈 후 3일 이내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강의	필요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o 귀하가 [월수금]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10일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오픈 교육	2일	신규 교육비용으로 대체	
보수 교육	1일	무료	

o 교육이수는 세부사항에 따라서 최소시간 및 비용 등 달라지며, 내용확정 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o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와 직원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o 당사는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귀하나 귀하가 채용한 직원의 교육에 대한 이해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개점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 ㅇ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기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의 2023년 말 기준 다음과 같이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안산본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35,115호(초지동,제일프라자)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12년 7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699,552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31-410-056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상담과(044-200-4239~4241) 또는 가맹유통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_1.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1_2.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무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서 창업문의: 031-410-0563

- 32 -